

2012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

공사 규모	공사 기간	간접노무비		산재,고용 보험료	건강,연금 보험료	퇴직공제 부금비	산업안전보건관리비	환경보전비	기타경비		일반관리비		이 윤
		(직노)×율		(노)×율	(직노)×율	(직노)×율	○도급자관급미포함 : (재+직노)×율 ○도급자관급포함 : a,b중 작은 금액적용 a. (재+직노+도급자관급)×율 b. (재+직노)×율×1.2	(재+직노+산경)×율	(재+노)×율		(재+노+경)×율		
		토목	조경						토목	조경	토목, 조경	전문공사	
50억 미만	6개월이하 (183일)	10.6	10.2	[산재보험료] : 3.7 [고용보험료] ○ 1등급: 1.24 ○ 2,3등급: 0.92 ○ 4등급: 0.83 ○ 5등급: 0.81 ○ 6등급 이하 : 0.79 ※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(2011.12.22공고)	[건강보험료] : 1.70	2.3	5억 미만	○ 0.9 : 도로 (교량, 터널, 활주로) ○ 0.4 : 플랜트(발전소,쓰레기소각로) ○ 0.5 : 지하철 ○ 1.5 : 철도 ○ 0.5 : 상하수도(배수,하수처리장,정수장) ○ 1.8 : 항만(오락,준설도, 방지막설치필요시, 간척, 준설) ○ 0.8 : 항만(방지막 불필요시,간척,준설) ○ 1.1 : 댐 ○ 0.6 : 택지개발 ○ 0.7 : 주택(재개발, 재건축) ○ 0.3 : 주택(신축) ○ 0.5 : 주택 외 건축 ○ 0.3 : 조경 ○ 0.8 : 기타토목(하천등) ※적용제외 : 전기,정보통신,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	6.2	5.8	50억 미만 : 6.0	5억 미만 : 6.0	50억 미만 : 15.0
	7-12개월 (365일)	9.6	9.2				○ 일반건설 - 갑:2.48 을:2.66 ○ 특수 및 기타 : 1.24 ○ 철도궤도 : 2.33 ○ 중건설 : 3.18		6.2	5.9			
	13-36개월 (1095일)	9.9	9.5				5억 ~ 50억 미만		6.3	6.0			
	36개월이상(1096일)	10.8	10.4				○ 일반건설 - 갑: 1.81+3,294천원 - 을: 1.95+3,498천원 ○ 특수 및 기타 : 0.91+1,647천원 ○ 철도궤도 : 1.49+4,211천원 ○ 중건설 : 2.15+5,148천원		6.7	6.3			
50억~300억 미만	6개월이하 (183일)	9.3	8.9	[연금보험료] : 2.49	노인장기요양 보험료 (건강보험료×율)		5억 ~ 50억 미만	○ 0.6 : 택지개발 ○ 0.7 : 주택(재개발, 재건축) ○ 0.3 : 주택(신축) ○ 0.5 : 주택 외 건축 ○ 0.3 : 조경 ○ 0.8 : 기타토목(하천등) ※적용제외 : 전기,정보통신,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	6.4	6.1	50~300억 미만 : 5.5	5~30억 미만 : 5.5	50~300억 미만 : 12.0
	7-12개월 (365일)	8.3	7.9				○ 일반건설 - 갑: 1.81+3,294천원 - 을: 1.95+3,498천원 ○ 특수 및 기타 : 0.91+1,647천원 ○ 철도궤도 : 1.49+4,211천원 ○ 중건설 : 2.15+5,148천원		6.5	6.1			
	13-36개월 (1095일)	8.6	8.2				50억 이상		6.6	6.2			
	36개월이상(1096일)	9.4	9.0				○ 일반건설 - 갑:1.88 을:2.02 ○ 특수 및 기타 : 0.94 ○ 철도궤도 : 1.58 ○ 중건설 : 2.26		6.9	6.6			
300억~1000억 미만	6개월이하 (183일)	9.1	8.7	노인장기요양 보험료 (건강보험료×율)	노인장기요양 보험료 (건강보험료×율)		50억 이상	○ 0.6 : 택지개발 ○ 0.7 : 주택(재개발, 재건축) ○ 0.3 : 주택(신축) ○ 0.5 : 주택 외 건축 ○ 0.3 : 조경 ○ 0.8 : 기타토목(하천등) ※적용제외 : 전기,정보통신,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	6.5	6.1	300~1000억 미만 : 4.7	30~100억 미만 : 4.7	300~1000억 미만 : 10.0
	7-12개월 (365일)	8.1	7.7				○ 일반건설 - 갑:1.88 을:2.02 ○ 특수 및 기타 : 0.94 ○ 철도궤도 : 1.58 ○ 중건설 : 2.26		6.5	6.1			
	13-36개월 (1095일)	8.4	8.0				○ 일반건설 - 갑:1.88 을:2.02 ○ 특수 및 기타 : 0.94 ○ 철도궤도 : 1.58 ○ 중건설 : 2.26		6.6	6.2			
	36개월이상(1096일)	9.3	8.9				○ 일반건설 - 갑:1.88 을:2.02 ○ 특수 및 기타 : 0.94 ○ 철도궤도 : 1.58 ○ 중건설 : 2.26		7.0	6.6			
1000억 이상	6개월이하 (183일)	8.7	8.3	격자명부기준 (2011.12.22공고)	6.55	1000억 이상	○ 0.3 : 조경 ○ 0.8 : 기타토목(하천등) ※적용제외 : 전기,정보통신,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	5.8	5.4	1000억 이상 : 4.2	100억 이상 : 4.2	1000억 이상 : 9.0	
	7-12개월 (365일)	7.7	7.3			○ 일반건설 - 갑:1.88 을:2.02 ○ 특수 및 기타 : 0.94 ○ 철도궤도 : 1.58 ○ 중건설 : 2.26		5.8	5.5				
	13-36개월 (1095일)	8.0	7.6			○ 일반건설 - 갑:1.88 을:2.02 ○ 특수 및 기타 : 0.94 ○ 철도궤도 : 1.58 ○ 중건설 : 2.26		5.9	5.6				
	36개월이상(1096일)	8.9	8.5			○ 일반건설 - 갑:1.88 을:2.02 ○ 특수 및 기타 : 0.94 ○ 철도궤도 : 1.58 ○ 중건설 : 2.26		6.3	5.9				

- ☐ 공사이행보증수수료 : [(재+직노+산출경비)×0.016%+4.3백만원]×공기(년)

☐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: 50억(추정가격)미만 : 0.070%, 50억~100억(추정가격)미만 : 0.069%, 100억~300억(추정가격)미만 : 0.064%
(재+직노+산출경비)×율
300억(추정가격)이상 (최저가납찰대상공사 포함) 토목및산업설비 : 0.058%, 건축 : 0.058%, 터키·대안공사 : 0.073%
※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956호, 2010.12.20) : 적용시기 '10.12.20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
- 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: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726호(2009.8.24) 고시 요율 적용

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: 노동부고시(2012-23)참조
○ 일반건설(갑) : 건축건설, 도로건설, 기타건설, 철도·궤도의 보수복구공사,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,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, 지하철도, 지하상가,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
○ 일반건설(을) : 기계장치공사, 삭도건설공사 ○ 철도 또는 궤도건설 : 철도,궤도건설(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) 및 그에 따른 역사·과선교,송전선로
○ 중건설 : 고제방(댐)(높이20m이상의 제방, 방파제, 안벽), 수력발전시설, 터널(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, 지하도,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) 신설공사
○ 특수 및 기타건설 : 준설,조경(전문포함),택지조성(경지정리포함),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(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: 일반건설(갑) 적용)

☐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
○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: <재료비+직접노무비+산출경비>의 합계액
○ 산업안전보건관리비 : <재료비(관급포함) + 직접노무비>의 합계액, 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
○ 일반관리비, 이윤 : 추정가격 기준
- 산재,고용보험료 :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(주택건설사업자,건설업자,전기공사사업자,정보통신공사사업자,소방시설업자,문화재수리업자)
(다만 총공사금액((도급금액+관급재료)에서 부가세 제외)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)
- 건강,연금보험료 :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(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2011-271) 정산조건은 06.12.29입찰공고부터
- 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(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2011-271) 09.02.12입찰공고부터 적용
- 퇴직공제부금비 :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
- 공사이행보증수수료 : 최저가입찰대상공사(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)
- 환경보전비 :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(환경보전비)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(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(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(42개))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)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(2010.12.20개정)
- ☐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(추정금액기준)
1등급 : 1300억이상, 2등급 : 1300억~700억이상
3등급 : 700억~400억이상, 4등급 : 400억~270억이상
5등급 : 270억~190억이상, 6등급 : 190억~130억이상
7등급 : 130억~95억이상
※ 국토부 보험요율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
※ 추정금액=추정가격+관급액+부가세

☐ 기타경비 항목 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인쇄비,

☐ 2000.7.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() 7.31이전
·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.75%(85%)미만인 경우:87.75%(85%)
· 추정가격10억~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86.75%(83%)
· 추정가격50억~100억미만으로 85.5%(80%)미만인 경우:85.5%(80%)

☐ 고용보험료 적용기준(국토부고시 2011-271)
· 일반(등급)공사 : 해당등급 요율적용
· PQ,실적대상 :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(토목,건축구분)
· 수의계약대상 :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
· 기타공사 :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

☐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